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제3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위기로 각종 모임이 제한되어 불가항력적으로 시설 대관을 취소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관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권고의결을 통해 공공시설의 대관료 환불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대관자에 대한 불공정·불편 요인을 제거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에 근거한 생태학습관 등의 경우에도 대관료 반환과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분쟁 소지 및 재산권 침해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관료 반환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상 미비한 대관료 반환 규정 및 그 세부 기준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생태학습관 등의 대관료 반환 규정 및 세부기준을 신설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